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5. 31 선고 2022가단10869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

담당 변호사 김상문

변 론 종 결 2023. 5. 17.

판 결 선 고 2023. 5. 31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2/9 지분에 관하여 2021. 3. 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69,995,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69,995,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실관계

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.

가. 원고는 B에 대하여 2018. 7. 25. 성립한 1,815,250원의 부가가치세 채권, 2017. 12. 31.

성립한 56,060,390원의 종합소득세 채권(이하 위 각 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합하여 ‘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채무’라 한다)이 있다.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는 2021. 3. 26. 기준으로 68,080,820원, 2022. 11. 15. 기준으로 69,995,310원이다.

나. C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, 별지 목록 제6항, 제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,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다가 2020. 11. 22.

사망하였고, C의 배우자인 피고가 1/3 지분, C의 자녀들인 B, D, E이 각 2/9 지분씩 C을 상속하였다.

당시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는 채권최고액 5억 2,000만 원, 피담보채무액 2억 5,000만 원, 채무자 C로 된 공동근저당권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이 설정되어 있었다.

다. 피고, B, D, E은 2021. 3. 9. 별지 목록 제1, 2, 6, 7,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 상속하되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,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고, 별지 목록 제6, 7,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D이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이다. 그에 따라 2021. 3. 2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2021. 7. 23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,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,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21. 7. 27.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.

마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 및 가액은 아래와 같다.

1) 적극재산

-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(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제외): 112,100,833원[= (754,453,750원 - 250,000,000원) × 2/9, 원 미만 버림]
-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: 27,434,000원
- ③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: 220,000원
- ④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: 2,222,000원 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8분의 1 지분: 4,842,000원 ⑥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8분의 1 지분: 4,392,000원
- ⑦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27분의 2 지분: 8,099,555원

2) 소극재산

- ① 이 사건 조세채무: 68,080,820원(2021. 3. 26. 기준)

2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가.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인하여 B의 소극재산 가액 68,080,820원이 적극재산 가액 합계 47,211,555원(= 27,434,000원 + 220,000원 + 2,222,000원 + 4,842,000원 + 4,392,000원 + 8,099,555원)을 초과하게 되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 ① B은 C의 사망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, C의 사망 이전에는 적극재산이 전혀 없었다가, C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. ② 그런데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또 다른 상속재산분할 협의(별지 목록 제3, 4,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)를 통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겨주었다.

다.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. 그런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,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라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. 11. 15. 당시의 이 사건

조세채권 69,995,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69,995,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한다.

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 피고는 1967. 3. 3. C와 혼인하였고,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1981. 3. 27. 및 1994. 2. 1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, 2020. 11. 22. 사망할 때까지 이를 소유하였다.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.

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.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공유지분이 있었고,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였음을 고려할 때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. 그런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또 다른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피고와 D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B은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. 이 사건 조세채무의 대부분은 B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인데, B과 피고 사이의 평소 관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, B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상당한 차익을 얻으면서 매도한 사실을 피고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이유빈

별지

1. 파주시 F 대 966㎡

2. 파주시 F [도로명주소] 파주시 G

연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, 판넬조 스라브지붕 및 판넬지붕

3층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, 창고

1층 87.60㎡ (주택) 61.20㎡ (창고)

2층 112.08㎡ (주택)

3층 81.00㎡ (일반음식점) 38.70㎡ (일반음식점)

3. 파주시 H 답 319㎡

4. 파주시 I 답 20㎡

5. 파주시 J 답 202㎡

6. 파주시 K 전 538㎡

7. 파주시 L 전 488㎡

8. 파주시 M 답 2278㎡. 끝.

